

公共圖書館의 所屬廳 一元化와 職制의 合理化

梁 泰 鎮
國立中央圖書館司書官

차 례

1. 머릿 말
2. 所屬廳과 職制의 關聯性
3.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所屬廳 現況
4. 二元化의 要因
5. 主要國들의 公共圖書館 行政體制
6. 二元化 現象에 대한 是正案
7. 職制
8. 職制現況
9. 職制의 亂脈相
10. 職制의 統一化
11. 맺는 말

1. 머릿 말

五.一六 以後 우리 나라의 公共圖書館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鼓舞의인 發展을 가져 왔다.

그 두드러진 實例로 오랜동안 圖書館界에 宿願이던 圖書館法 및 同施行令이 制定 公布되어 圖書館 發展에 기틀이 되어 왔으며 또한 公共圖書館 設置 五個年 計劃¹⁾에 따라 年次의으로 市, 郡에 圖書館을 建立하는 段階에 이른 것은 커라란 治績이라 하겠다.

이러한 發展狀況으로 最近에는 公共圖書館 數만도 무려 104個館이라는 數로 늘어났다. 이처럼 量的으로 增加된 公共圖書館 들로서도 몇가지 難題를 안고 있어 앞으로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이 보다 알차게 發展하여 나가는데 커다란 沮害 要因으로 登場되고 있어 筆者는 이중 公共圖書館에 있어서의 所屬廳의 一元化와 職制에 대한 問題를 擧論하여 보고자 한다.

2. 所屬廳과 職制의 關聯性

職制²⁾라 함은 行政機關의 組織 構成員 職務 분담 등을 規定하는 것으로 當該機關의 所屬廳에 따라 組織 및 構成 등에 差異를 두게된다.

여기서 말하는 職制와 所屬廳은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에 관한 것으로 그 所屬廳이 어디든 간에 圖書館 規模에 따른 職制의 統一性있는 制定과 組織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73年 3月 25일에 改正 公布된 地方公務員 任用令에 따라 終前까지 內務部 傘下에 있는 公共圖書館 들도 司書職으로 人員을 充원될 수 있는 法的 뒷받침이 되어있으나 이들 大部分의 圖書館들이 職制가 마련 되어 있지 않은가하면 또 職制가 있는 곳도 결코 合理的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點 등을 감안하여 하루 속히 所屬廳의 一元化를 期하고 職制의 마련이 合理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따라서 公共圖書館의 所屬廳의 一元化는 當該 圖書館들의 職制의 制定내지 改正과도 密接한 關聯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의 所屬廳 現況

最近에 文教部가 集計한 公共圖書館現況³⁾을 살펴 보면 우리 나라의 圖書館數는 이제까지 韓國圖書館協會가 發行한 韓國圖書館統計(1973年版)와는 상당수의 差異를 나타나는 104個館이나 된다.

이를 各 市, 道別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 소속청별 현황(문교부조사)

구 분	행정구역수	도서관 설치수				비고
		문교부	내무부	사 립	계	
시도별						
서울	11	4		3	7	
부산	6	2		1	3	
경기	28	3	11		14	
강원	19	3	5		8	
충북	12	4	3		7	
충남	17	10			10	
전북	16	8	2		10	
전남	28	10	3	1	14	
경북	34	10	5	2	17	
경남	25	11	1		12	
제주	3	2			2	
계	199	67	30	7	104	

이들 104個館의 公共圖書館을 所屬廳別로 좀 더 詳細히 살펴 보면 文教部 所屬이 67個館으로 全體의 64%를

1) 全國市洞單位設置 五個年計劃 문교부.
 2) 法律學辭典, 法文社 刊 1970. p.930.
 3) 文教部에서 調査集計한 統計.

공공도서관 소속별 비율현황

소속청별	구분		관 수	비 율	비 고
	문 교 부	내 무 부			
문 교 부			67	64%	
내 무 부			30	29%	
기 타			9	7%	사 립

차지하고 있어 單然 數的으로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內務部 所屬인 市, 郡 관할이 약 29%이고 私立圖書館이 9個館인 7%이다.

이를 地域別로 살펴보면 서울이 文教部 所屬이 4個館이고 私立이 3個館이다. 釜山直轄市는 文教部所屬이 2個館이고 私立이 1個館이며 京畿道는 內務部 所屬이 單然 全國的으로 가장 많은 11個館으로 全體 圖書館數에 거의 10%나 차지하고 있으며 文教部 所屬은 불과 3個館으로 釜山直轄市와 濟州道를 除外하고는 文教部에 所屬되어 있는 公共圖書館이 가장 적은 地域으로 나타나 있다. (江原道와는 同一) 그리고 私立은 1個館도 없다.

江原道는 文教部 所屬이 3個館에 內務部 所屬이 5個館이고 私立은 없다. 충청북도는 文教部 所屬이 4個館이고 內務部 所屬이 3個館으로 반분된듯한 感이 있고 忠淸南道는 全部 文教部 所屬으로 10個館이다. 行政區域上 道別로 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所屬廳이 一元化되어 있는 道라 할 수 있다.

全羅北道는 文教部 所屬이 8個館이고 內務部 所屬은 2個館 뿐이며 私立은 없다. 全羅南道는 文教部 所屬이 10個며 內務部 所屬이 3個館, 私立이 1個館이다. 慶尙北道는 行政區域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地域으로 道內에 所屬되어 있는 圖書館 數가 가장 많은 17個館으로 文教部 所屬이 10個館이고 內務部 所屬은 5個館이고 私立이 2個館이다. 慶尙南道는 文教部 所屬이 11個館에 內務部 所屬이 1個館이다.

끝으로 濟州道는 文教部 所屬의 2個館 뿐이다. 以上으로 各市, 道別 公共圖書館의 所屬廳別 現況을 낱낱이 살펴 보았는데 이는 各市, 道別內에서 조차도 그 所屬廳이 二元化 되지않으면 안될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를 糾明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行政區域別上에 나타난 所屬別 公共圖書館을 열거하여 보았다.

以上的 諸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所屬廳의 二元的 現象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 그 原因을 살펴 보자.

4. 二元化의 要因

흔히 圖書館의 三大要素를 施設, 資料, 人員을 드나 財源을 빼놓고는 이들 三大要素도 無意味하다고 본다. 여하튼 奉仕活動의 領域이 대체로 비예산 事業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 財政的인 뒷받침은 絕對的이라

할 수 있다.

所屬廳 二元化의 現象도 그 根本底因은 財政問題가 아닌가 생각된다.

勿論 이러한 財源問題도 制度的인 뒷받침이 걸려된 데 그 原因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圖書館들이 지니고 있는 制度的인 취약점을 살펴 보자.

圖書館法 第19⁴⁾條를 보면 國家는 公共圖書館을 設置運營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그 經費의 補助關係를 規定한 關係條文이 있다. 이를 引用하여 보면 “國家는 公共圖書館을 設置運營하는 地方自治團體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當該 圖書館의 施設과 設備에 要하는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아마도 公共圖書館이 國家의 補助를 받을 수 있는 有一한 根據가 될 同法이 財政補助를 國家가 豫算의 範圍 안에서 公共圖書館을 設置運營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當該 圖書館의 施設과 設備에 要하는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財政補助나 經費 부담에 있어서 教育委員會 所屬인 公共圖書館에 대하여 責任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實質的으로 財政을 장악하고 있는 市, 郡團體에 所屬되는 結果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⁵⁾

다음으로 同法 第7條는 國家 등에 대한 公共圖書館設置를 권장한 바 그 關係條項을 引用하여 보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衆의 社會教育 및 文化의 向上을 위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 育成에 努力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圖書館 設置에 대하여 小極的이고 또한 임의적이므로 教育委員會 所屬下에 있어서는 事實上 圖書館의 增築 내지 확장計劃에 있어서 期待할 바가 極히 희박하므로 事實上的 財政을 장악하고 있는 市, 郡에 所屬되는 結果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要컨대 圖書館法 規定이 圖書館의 設置 施設 管理 運營 등에 대한 經費를 教育委員會 自體가 그 經費의 一部라도 부담할 能力이 없어 그 運營費 全部를 市, 郡의 自治團體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實情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圖書館法이 發効되기 以前에 設立되어 있는 圖書館들은 設立者에 따라 自然 그 所屬이 定해지게 될 點도 오늘 날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의 所屬廳이 二元化된 要因의 一面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既 設立된 圖書館이라도 圖書館法上에 이들 圖書館들에 대한 所屬廳의 귀속 問題가 전혀 明示되지 않았

4) 도협월보. 도서관법회의록[1963. 9. 10 p.24~25.

5) 도서관. 公共圖書館의 소속청 一元化. 김중문. p.45~46.

으나 이러한 現象이 나타난 것도 不得已한 現實이라 하
지 않을 수 없다.

5. 主要國들의 公共圖書館 行政體制

世界各國의 圖書館 行政 形態⁶⁾를 보면 同一하지 않
으나 대체로 불란서를 비롯한 北歐諸國이나 이태리 등
은 中央집권적인 圖書館 政策을 취하고 있으나 英國,
美國, 스위스 등은 地方 分權의인 圖書館 政策을 취하
고 있고 이웃나라인 日本은 中央 集權적인 圖書館 政
策도 아니요 그렇다고 地方 分權의 政策도 아닌 그 中
間 形態를 취하고 있다.⁷⁾

이제 이들 여러 나라들의 圖書館政策을 國家別로 살
펴보자.

日本——日本 圖書館은 設置 主體로 보면 國家, 地
方, 公共團體, 法人, 임의단체, 公共企業體, 私企業體
등에 設置되는 것으로 區分할 수 있다.

그 行政 體系는 國會圖書館法은 國會法에 의하고 圖
書館法은 社會教育法에 의한 것이며 學校圖書館法은
學校·教育法에 의해 設置되며 이 밖에 圖書館은 所管
省의 設置法에 따르는 등 多種多樣하다. 여하튼 日本
의 公共圖書館은 文部省에 屬해 있으며 圖書館 業務
는 文部省 社會教育課에서 取扱되고 있다. 그리고 現
行 圖書館法의 規定上으로는 다만 地方 公共團體 圖書
館의 設置 및 設備에 要하는 經費가운데 國家의 補助
를 받고자 할 때 그 基準의 심사와 감독권을 가지는 이
외에 公共圖書館에 대해서 지시, 명령을 내리는 權限
은 거의 없다.

地方에는 地方 團體의 圖書館의 設置, 行政 및 館長
이하 職員의 任命權까지 教育委員會에서 장악하고 있
다.⁸⁾

中華民國——自由中國의 圖書館은 教育部內에서 社
會教育課에 所管되어 있고 地方機關은 各省內에서 縣
은 縣의 教育行政部署에서 담당하고 있다.⁹⁾

英國——英國의 公共圖書館은 國務長官에 所屬되어
있으며 國家諮問委員會가 構成되고 長官 밑에는 地域
中央圖書館이 있고 圖書館은 地域理事會의 諮問을 받
고 地域中央圖書館을 中心으로 各地區마다 圖書館이
設置 運營되고 있다.¹⁰⁾

美國——美國의 國家中央圖書館은 議會圖書館으로
館長은 上下 兩院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議
會圖書館에 關聯된 行政權만 가진다.

연방정부의 各 圖書館은 各部廳 이하에 屬하며 연방
教育廳과 行政의인 關聯性을 갖는다. 그러나 地方政府
圖書館이나 一般 公共圖書館과는 行政의인 關聯은 거
의 없다. 연방 政府圖書館은 연방도서관 委員會의 諮
問을 받게 된다. 主政府 圖書館과 公共圖書館 등은 연

방교육청 圖書館課에 의하고 全般的인 發展에 관한 業
務를 遂行한다.

各州의 公共圖書館은 公共圖書館 확장국이 그 奉仕
計劃과 施行을 위한 責任과 權限을 갖는 등 다양하
다.¹¹⁾

以上으로 圖書館 行政制度에 있어서 美國, 英國, 日
本 등 先進諸國의 行政制度를 簡略하게 소개한 바 우
리 나라 圖書館 行政制度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하겠
다.

6. 二元化 現象에 대한 是正案

圖書館 行政이 圖書館法에 의거 그 法的 뒷받침을
받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圖書館 政策이 수립되어 있
지 않다. 특히 圖書館 行政을 전달할 文教部는 하루 속
히 圖書館 業務를 전달할 部署를 新設하여 圖書館 育
成策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기 바란다.

現行 文教部 職制 13條 3項에 明示된 社會教育課의
業務分掌¹²⁾은 總 9種으로 이중 圖書館 業務가 포함되
고 있는데 아무리 職制의 改正이 어렵더라도 전달 부
서의 新設이 불가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하여 關係 當局者는 二元화된 所屬廳을 一元化
하는데 政策의인 모든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이다. 所屬廳 二元化에 대한 問題는 全國 公共圖書館
大會時에 건의된 事項¹³⁾이 筆者의 見解와 다를바 없
어 이를 是正案으로 代身하고자 한다.

現在 市, 郡에 所屬되어있는 圖書館을 各 市, 郡 教育
廳 傘下로 移管하는 것이 政府 組織法이나 文教部職制
로 보아 文教部의 管掌事項으로 看做되며 文教部는 內
務部와 折衝하여 財政的인 問題를 解決하여야 하지 않
을까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財源의 兪출은 義務教育費中에서 充當
한다든가 一般會計 收入金이나 地方 交付稅法 및 同施
行令에 圖書館費를 징수할 수 있도록 삼입한다든가 이
밖에 現實的 與件이 許諾하는 範圍內에서 財源 兪출방
법을 강구하여 兩分된 所屬廳을 一元化하여 圖書館 政
策을 구현 하였으면 한다. 所屬廳의 一元化는 自然 圖

6) 圖書館ハントブック. 日本圖書館協會. 1960. p.63~68.

7) 日本의 圖書館. 日本圖書館協會 編. 1967. p.6.

8) 도서관. 국가중앙도서관에 관한 제도연구. 정필모. 1970. 5. p.13~14.

9) 도협월보. 중화민국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 심우준 역. 1970. p.17~18.

10) 도협월보. 영국공공도서관의 데프렌스 서비스기준. 양태진 역. 1971. 5. p.8.

11) 도협월보. 미국의 도서관 및 정보과학 전국위원회 설치 법제정의 의의와 경과. 양태진 역. 1971. 6. p.7~8.

12) 문교법전. 문교부법무관실 편. 1973. p.129.

13) 도협월보. 전국 공공 대학도서관 대회 건의사항. 도협월. 1971. 10. p.20.

書館政策의 合理性을 期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이다.

그리하여 現在 文教部 所屬의 公共圖書館은 그 行政體系가 文教部 社會教育課로부터 各 市,道 教育委員會를 거쳐 市,郡 教育廳을 通하여 公共圖書館에 거치게 되고 內務部는 各 道,市內務局 地方課에서 市,郡總務課나 公報室을 거쳐 公共圖書館에 이르는 二元化된 行政體系를 갖게 되며 이 밖에 財源 영달에 따르는 절차 및 진입 유형인 경우는 文教部 管下 圖書館은 市 一般會計豫算에서 轉入되어 當該 市,道 教育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後에 市 自體에서 直接 經理하거나 或은 當該 圖書館에 進도 經理하는 유형을 取하고 있어서 圖書館 行政이 兩分되므로 一貫性이 缺如되어 確固한 政策이 缺如되며 몇몇 圖書館의 경우는 財政經費 源출은 一般會計에 의지하고 運營管理에 대한 全般的 감독은 教育委員會가 하고 있으므로 兩機關의 外중에서 困難을 겪기 일수이며 그나마도 法文上에 明記되어 있는 國庫補助는 事實上 全無한 狀態이며 豫算의 編成과 配付資金의 영달에 있어서 經유하는 機關部署와 形式的인 節次를 밝는 것이 複雜하고 適期에 豫算 調達이 不可能하여 도서관운영에 막대한 支障을 招來하고 있다. 이러한 沮害 要因도 所屬廳이 一元化되고 行政體系가 一元化되면 自然 解消될 것으로 본다.

7. 職 制

職制라함은 職務分擔에 관한 制度에 관한 것으로 機能遂行을 위한 職務內容과 職級 人員 등이 明示되어야 한다. 즉 하나의 機關이 設置 運營되기 위하여서는 그 先行條件으로 그 機關運營의 根幹이 되는 職制는 明確히 있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現在 우리 나라의 公共圖書館은 그 職制가 없는 곳이 적지 않거나 職制가 있다손 치더라도 統一性이 缺如되고 無原則한 狀態이다.

最新 統計資料를 入手할 수 없어 多少 오래된 값이 있으나 現在까지 筆者가 아는 限 그 以後 職制의 改正乃至 制定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1969年度 3月末까지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의 職制現況을 參考로하여 職制問題를 기술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 58個中 職制가 制定되어 있는 圖書館은 22個館으로 全體圖書館中 37%이고 職制없이 運營되는 圖書館이 37個館으로 63%에 이른다.

이를 所屬廳別로 區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8. 所屬廳別 公共圖書館 職制現況

소속청별		공사립구분			계
		공	립	사	
문	교	부		12 (3)	20(11)
내	무	부		38(11)	38(11)
합	계			12 (3)	58(22)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圖書館들이 職制없이 運營되고 있으며 職制가 있다 하여도 바람직한 職制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基本的으로 必要한 人員을 配定할 수도 없으려니와 豫算이나 資料의 確保가 어려움은 말할 나위가 없다.

9. 職制의 難脈上

職制가 있는 圖書館이라도 특히 職種이나 職級은 매우 다양하기 이룰데 없다. 우선 職種을 살펴보더라도 地方公務員 任用令이 改正되어 司書職種이 생겼더라도 大部分의 圖書館이 行政職이나 臨時職으로 채워져 있고 특히 몇몇 圖書館은 教育研究員으로 勤務케 하고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은 實情은 圖書館 業務가 아직도 專門職으로서 學問과 文化財를 다룬다는 特殊業務로 認定하지 않고 單純한 行政業務의 一種으로 보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公務員의 職群表에 의하면 學事, 工業, 農林, 物理職 등은 獨立 職種으로 分類하고 있으나 司書職은 行政職種內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業務를 指揮監督하고 그 機關을 代表하는 館長의 職級도 매우 多樣하다.

文教部에 所屬된 公共圖書館長의 경우 위로는 三級甲에서 四級에 이르는 館長이 있는가 하면 內務部에 所屬되어 있는 公共圖書館長 역 三級에서 五級까지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 圖書館長의 職種이 어떠한 基準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

서울特別市나 釜山直轄市의 市,郡立圖書館 등에 있어 奉仕 對象이나 規模 등을 감안하여 職制가 制定되고 級數에 等差가 생긴 것이나 하면 事實 그런 것도 아니다. 勿論 여기에는 이미 圖書館이 선 후에 圖書館法이 생기는데도 그 原因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것으로 職級의 多樣化를 내세울 수는 없다.

10. 職制의 統一化

이같은 職級의 差는 圖書館의 規模에 따라 全國적으로 統一된 原則위에 均衡을 維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특히 이러한 職級의 不均衡은 地域社會속에서 圖書館의 育成에 크게 영향을 주는 他 機關과의 유대關係에도 많은 問題點을 提起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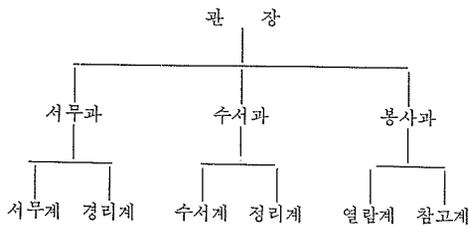
이 밖에 職制中 가장 重要한 定員問題도 圖書館法施行令 第六條 第二項에 의거하여 策定 되어있고 그 算出根據는 建物坪數에 基礎를 두고 있다.

비록 이에 대한 基準이 日本 等地的 公共圖書館들과 比較하여 基準度가 낮다고는 하나 이나마 그 基準을 充實히 채워 주는 것이 時急한 일이다.⁴⁾

最近에 業務分掌의 合理性을 期하기 위하여 서울의 市立圖書館들이 館長 밑에 3個係를 두고 그 中 1個係만이 司書官으로서 係長으로 補하고 나머지 係는 司書로 補하는 등의 體制의 모순성을 止揚하기 위하여 이들 4個係를 課로 승격 시키고자하는 職制改編案 推進은 매우 適當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筆者는 圖書館法 施行令 第六條 二項에 의거하여 早速히 職制가 없는 圖書館은 職制를 制定하여 圖書館 自體內의 活動은 勿論 國內의 公共圖書館들이 各己 職級數의 均衡을 이루어 앞으로 圖書館間의 相互 協力は 勿論 業務體制의 能率을 극대화 하여야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체로 우리 나라 中小都市에 있어서의 公共圖書館 職制는 다음과 같은 體制로 이루어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하여 예시해 보고자 한다.



맺 는 말

오늘 날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界가 안고 있는 難題의 解決은 누구보다도 圖書館界에 몸담고있는 圖書館員 自身들의 第一次的인 使命이라 하겠다.

비록 단 시일내에 成果가 없다해서 失望하거나 解決의 義務를 등한시 해서는 안될 것이다.

所屬廳의 一元化와 職制問題는 어제 오늘의 宿題가 된 것이 아닌바에는 그간 公共圖書館界가 微力이나마 國家發展에 寄與 해왔고 앞으로 우리 나라 國力伸長에 밀 거름이 되어야 할 圖書館界는 當面한 이들 難題를 解決하는데 全力을 다 해야 할 것이다.

14) 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직제문제. 신학균. 1970. 10. 11. p 31~32.

1974年度 圖書館統計調查에 즈음하여

그동안 圖書館統計로서 「한국도서관 통계」책이 每年 本協會의 調查實施로 發刊되어 왔으나 未備點이 많이 發見되고 있습니다. 實際 基本資料의 調查過程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해서 많은 努力에도 불구하고 좀체로 補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統計冊은 國內唯一의 韓國圖書館統計資料로서 利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本協會는 더욱 무거운 責任感을 가지고 完全한 것으로 補完하기 위하여 꾸준히 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나 現場에서의 基本資料의 未備와 記入의 不確實性 등으로 圖書館現場의 綜合的 파악은 물론 統計解析과 그 應用의 發展을 期할 수 없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現象은 우리 뿐만 아니라 世界各國의 一般의인 추세로서 지난 1970年 유네스코總會는 이를 重視하여 「國際圖書館 統計表 標準에 관한 勸告」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本協會는 이번이 이와 같은 유네스코의 권고에 副應하면서 그간의 未備點을 補完하여 統計의 效果的인 國內利用을 圖謀코자하여 종전의 調查表 樣式을 대폭 增補하여 各圖書館에 發送하였습니다.

本調查表의 決定은 教育調查分科委員會에서 作成한 것으로서 수차에 걸친 檢討와 研究를 거듭한 끝에 우리 나라 統計가 國際圖書館統計 基準에 到達되고 아울러 우리의 實情에 必要한 內容을 포함시키도록 努力한 것입니다.

그러나 統計의 權威는 무엇보다도 基本資料記入의 正確性에 있으므로, 各圖書館에서의 誠意있는 記入이 先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積極的인 協助를 要望하면서 이미 各圖書館에 發送된 調查表內容中 아래와 같은 몇가지 點을 確實히 하여 記入에 混線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 調查期間은 1973年 4月 1일부터 1974年 4月 1일까지의 1年間입니다.

둘째 調查表 7面(11. 장서유별통제)의 “일반도서”중 (동서) (고서)로 되어 있으나 (동서) (양서) 임이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記入하기 곤란한 內容은 各項目의 合計만 記入하기 바랍니다.

一線圖書館에서 다소 記入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誠意것 作成하여 조속히 보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